

正 款

(개정 : 2025. 04. 30)

서울특별시 제348호

사랑의복지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회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르신 분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봉사 정신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위하여 무의탁어르신을 위한 어르신무료급식 무료간병 대중가요 풍물 공연사업 어르신 분들 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알선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노유자 시설 관리사업 건강검증 을 위한 의료기관 설치 등 운영사업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랑의복지회 (이하,본회) 라 한다.

제 3 조[소재지]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8에 둔다.
2. 본회의 지부. 지회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지역에도 할 수 한다.

제 4 조[사업의종류]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수급어르신 및 노숙자 (무료급식)시설 운영사업
2. 간병인교육 및 취업 알선사업
3. 어르신 및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알선사업
4. 대중가요 및 풍물 공연사업
5. 노유자 시설 관리사업
6. 각종 공산품 판매사업
7. 각종 농 수산물 판매사업

제 5 조[수혜범위]

1. 본회 공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학교 종교 직업 기타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2.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나,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관서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회칙에 찬성하고 소정에 절차를 필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정관 제1조 목적에 찬동하고 만20세 이상 경로 효친사상이 투철한 자로서 준회원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자로 소정에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 (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효사상이 투철한 자로서 본회의 각종 사업에 자원봉사를 하는 자. 및 단체
(나) 본회에 입회된 자로서 그 기간이 6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제 7 조[가입]

본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각종단체포함)는 본회 회원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 승인을 득하고 입회원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정회원은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결의사항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찬조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9 조[포상]

본회에 기여가 현저히 인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 10 조[신고의무]

1. 회원이 본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기재사항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본회에 알려야 한다.
2. 회원은 월1회 이상 서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본회의 주요 연락사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 11 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서를 본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원 자격정지 자격 징계를 할 수 있다.
3. 전관 제8조 제10조 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
4.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해를 끼친 때

제 3 장 임 원

제 12 조[임원의 종류 와 종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7인(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 13 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원된 임원을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본회의 회장(대표자)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2. 본회의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임원의 선임제한]

본회는 임원 상호간의 관계가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본회의 회장유고시 또는 결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상태와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고문 등]

1. 본회는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후원위원 등 약간 인 을 둘 수 있다.
2.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후원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3. 고문 지도위원 운영위원 후원위원은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획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대표자 포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frac{1}{2}$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상정할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 감사에게 서신하거나 통신 연락을 한다.

제 21 조[의결 정족수]

1. 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00명 중 $\frac{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frac{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4. 해산에 관한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사업계획 및 추가사업 승인에 관한사항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본회의 재산 처분에 관한사항
8. 회비의 부담과 징수 방법에 관한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23 조[총회의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의사록은 본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 결산작성에 관한사항
3.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사항
4.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인 임원보선에 관한사항
5. 직원의 임명 복무 보수 등 제 규정의 재정에 관한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에 관한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사항
9. 기타(노유자 시설 관리사업) 등 회장이 발의한 사항

제 27 조[회의록의 작성]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청 및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본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 28 조[수익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중가요 풍물 공연사업
2. 어르신 및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알선사업
2. 노유자 시설 관리사업
4. 농수산물 육가공 위탁판매사업
5. 건강식품 판매사업
6. 커피 과일즙 김밥 토너스 오뎅 떡볶기 판매사업
7.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 ** 판매사업의 수익은 전액 당일활동르신분들에게 재세제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n/1로 나누어 드리고 본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上記 규정항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 29 조[자산구분]

1. 본회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자산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자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익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가) 별첨(본회 동산현황)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 나) 부동산
 -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시설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현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에 관한 단순한 지원 등 경로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기본자산과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4. 매년 4월 30일까지 사랑의 복지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5.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제 30 조[경비와 유지방법]

- ** 본회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하는 수입금, 수익사업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31 조[회계의 구분 등]

1. 본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같으며, 일반회계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회장이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제 32 조[회계의 처리]

총회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교)별도로 제정, 시행될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도록 한다.

제 33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34 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전문시설의 장과 이설의 사업계획을 하여 각각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 회계연도개시 1월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35 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7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 38 조[해산 및 합병]

총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본회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frac{1}{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9 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 총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부 칙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창립회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 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시

연도별 재무제표는 매년 총회를 거쳐 본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